

2024. 4. 16.(화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4월 1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
특별시서울

SEOUL
M! SOUL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

장애인자립지원과장	손 인 호	02-2133-7470
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7쪽

장애인자립정책팀장	윤 영 대	02-2133-7472
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서울시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댄다..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

- 지난해 시-복지재단 공동연구...수익금 부정 사용, 회계규칙 미준수 등 잘못 운영사례 확인
-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 이하 지급하는 기관도 다수...실효적인 행정처분책 필요
- 장애인당사자, 관계자 의견 청취 반영해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재지정 심사기준 마련
- 3년마다 재지정 심사 통해 기관 회계 투명성↑, 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도모

-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-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,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-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,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

한계가 있었다. 또,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.

- 장애인활동지원기관 :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(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를 제공하는 기관
- 장애인활동지원급여 : 장애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바우처로 비용을 결제

-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▲중앙부처,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▲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·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▲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(활동보조) 운영현황 조사·분석 등을 골자로 한 ‘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(2023)’를 진행해왔다.
- 그 결과,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·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, ②모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, ③다른 기관·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보건복지부 지침상 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
 -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

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.

- 또한,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(22.5%)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,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종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.
- 2022년 기준,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,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.38%(최저임금 9,160원, 주휴일수당,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,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,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)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.
-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(6,321억 원)의 경우,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.6%를 차지한다.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,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,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.
-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,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.
-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고 2023년 12월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.

- 재지정 심사에서는 ▲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▲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▲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.

중점 평가 항목	주요 세부 심사항목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대상,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운영 여부 · 명절, 연휴, 여름 휴가철 등 서비스 제공 공백 기간 동안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실적
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동지원사 법정 임금 지급 여부 · 배상책임보험 가입, 독감예방주사 및 항정신정 약물검사 지원 등 복리후생 추진 실적
회계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· 활동지원서비스 수익금 지출 적정성 여부

-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('24.12월 기준)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.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, 폐업 처리해야 한다.

-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(3년)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아울러, 시는 오는 6~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.

-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, 고발·수사의뢰,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.

- 한편,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.
 -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’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,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
 -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.

-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”며, “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·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추진 근거
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)
-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
□ 운영 현황 : 총 183개소 ('24년 기준)

- 활동지원기관 :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여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

- 이용 장애인 26,176명, 활동지원사 29,331명 ※ 시간당 활동보조 급여 : 16,150원

-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분류

합 계	활동보조	방문목욕	방문간호	활동보조·방문목욕
183개소	168개소 (91.8%)	9개소 (4.9%)	2개소 (1.1%)	4개소 (2.2%)

※ 3개소 휴업 중(방문목욕 2, 방문간호 1)

- 기관 유형별 활동지원기관 분류

합 계	자립지원 센터	복지관	협동조합	장애인 단체	지역자활 센터	노인재가 (요양센터)	기 타
183개소	68 (37.1%)	29 (15.9%)	20 (10.9%)	20 (10.9%)	7 (3.8%)	8 (4.4%)	31 (17.0%)

- 최근 5년간 활동지원급여 관련 예산(국비 + 시비)

연 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지원예산(백만원) (국비 + 시비) (증감률)	632,179 (9.8%)	575,558 (15.2%)	499,579 (14.9%)	434,677 (19.9%)	362,508 (23.7%)	292,988 (32.1%)
대상자 수(명) (증감률)	26,176 (5.7%)	24,770 (2.7%)	24,098 (2.7%)	23,465 (5.5%)	22,464 (9.2%)	20,824 (5.4%)

□ 연구명 :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

□ 연구내용

- 중앙부처,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
-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·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
 - 활동지원사 및 전담인력 인건비, 제수당, 사회보험료, 퇴직적립금
 - 자산취득비, 임차료, 수용비
 - 기관운영비, 업무추진비, 경조사비, 기타 후생경비
 - 활동지원관련 사업비, 기타 사업비, 전출금 등
-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(활동보조) 운영현황 조사·분석
- 제도개선 제안사항

성격	제안 관련 내용
시행규칙	·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적합한 재무·회계규칙 신설
사업안내	·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⇒ ‘적용’ 으로 변경하여 명확화
	·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 ⇒ 내용 명확화 필요
	· 서비스 제공수입의 지출 활용범위에서의 우선순위 ⇒ 실행가능하도록 구체화
제안	·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 파악가능한 정보시스템 ⇒ 개선

□ 조사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

- '22년 기준,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중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 159개 중 151개소
- ※ 운영 중단 1개소, 조사활용이 어려운 자료를 제출한 7개소 등 총 8개소 제외

□ 연구기간 : '23. 2~11월

□ 연구기관 : 서울시·서울시 복지재단